



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에 44개 군 몰려

- 추경 예산 706억 원으로 5개 군 내외 추가 선정 예정, 신청 경쟁률 8.8대1
-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소득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최종 선정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(’26~’27년)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(4.20.~5.7.) 접수 결과, 44개 군(郡)이 신청했다고 밝혔다.

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*은 농어촌 소멸 위기,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참여 중인 사업으로, 농식품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취약지역(농어촌**)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(706억 원 규모)을 확보함에 따라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.

* 일정 기간(30일)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

** 농어촌지역은 고유가·고물가·고환율 등으로 인해 고용·소득·투자 위축과 인구감소, 소득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 영향이 큼

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59개(시범사업 실시 10개 군 제외)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, 44개 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.8대1을 기록하였다. 이러한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,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, 효과 등에 적극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.

<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 현황 >

구분	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
신청	44	1	8	4	4	5	11	5	6

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, 기본소득, 균형발전,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, 공정한 서류·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·발표할 예정이다. 다만, 사업참여 희망 지역(44개 군)의 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,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평가·선정 일정은 6월로 연기한다.

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”이라며, “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

담당 부서	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희중 (044-201-2811)
		담당자	사무관	박건우 (044-201-2817)



- **(사업 목적)**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,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
- **(추진 방향)** 인구감소지역* 군(69개) 중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,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군 대상 2년간('26~'27) 시범사업 추진
 - 대상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활력이 증진되도록 정부·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노력 병행
 - 대상 지역 주민 삶의 질 만족도,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,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본사업 방향 검토
- **(지원 내용)** 일정 기간(30일)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
 - **(사용지역)**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,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·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
 - **(사용처)** 중심지(읍)·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,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
- **(예산)** 인당 월 15만 원 지급 기준 '26~'27년간 시범사업 총사업비 약 1조 7,057억 원*(국비 40%, 시·도비 30%, 군비 30%)

* 인구 1만 명당 총사업비 360억 원 소요로 약 52.5만 명(약 15개 군) 지급 가능 규모